

2026.7.23

부록 B

요약본

주민발의안 1호

현장 개정안: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철회가능 동의' 부여 절차 간소화

우리 시에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벤치, 경사로, 화분, 카페 등의 공공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철회가능 동의'를 부여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시당국이 철회가능 동의를 부여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철회가능 동의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에 신문 공고를 게재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합니다. 노천 카페의 경우에는 시의회가 노천 카페를 부결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반면, 관련 지역사회 위원회 및 자치구청장, 시의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은 존속합니다.

철회가능 동의

개인이나 단체는 특정 상황에서 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 소유 공공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공급업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은 해당 인프라 설치를 위해 시로부터 프랜차이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도로 또는 보도 상하부에 구조물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할 권한을 이른바 '철회가능 동의'를 통해 부여합니다.

철회가능 동의는 부동산 소유주나 사업주가 자신의 부동산 앞 보도에 물품을 배치할 수 있도록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철회가능 동의 유형으로는 장애인용 출입 경사로나 쓰레기통 보관용 울타리, 보도상의 벤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 등이 있습니다. 식당 소유주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 앞 인도나 도로상에 노천 카페를 운영하려면 영업 허가과 철회가능 동의 둘 다 받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철회가능 동의에 대해서는 공공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시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철회가능 동의를 얻으려면 개인이나 사업체는 교통부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부, 또는 통신 인프라의 경우 기술혁신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청원인은 해당 공청회 공고를 지역 신문에 두 차례 게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위원회와 시의회 의원에게도 통지해야 하며, 시 공보에 15일 동안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그 후 교통부(또는 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혁신국)는 시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철회가능 동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도 유사한 공청회 및 공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6.7.23

노천 카페에 대한 철회가능 동의는 추가적인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제안된 노천 카페는 지역사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교통부가 철회가능 동의를 부여하더라도 시의회는 이를 부결할 수 있습니다. 보도 대신 도로상에 좌석을 배치하는 카페의 경우, 이러한 추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된 변경사항

이 개정안은 모든 철회가능 동의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신, 교통부 또는 기술혁신국은 제안된 철회가능 동의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철회가능 동의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청회 공고는 더 이상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없으며, 공고는 15일이 아닌 6일 동안만 시 공보에 게재하면 됩니다. 교통부 또는 기술혁신국은 철회가능 동의 청원 사실을 지역사회 위원회, 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이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천 카페는 다른 모든 철회가능 동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시의회가 노천 카페에 대한 철회가능 동의 부여를 더 이상 부결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행

이러한 헌장 개정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며, 그 이전에 제출된 철회가능 동의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발의안 2호

현장 개정안: 시 계약업체의 서류 업무 경감, 조달정책 위원회의 정기 회의 의무화

시의 조달 관련 법규에 다양한 변경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정책 위원회는 시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를 간소화해 시와 계약을 맺는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이게 되며, 관련 기관이 고객 서비스 계약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해 매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시장이 특정 계약 승인 권한을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시의 조달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정책 위원회가 분기당 최소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 절차

현재 시장과 감사관은 시 계약 입찰 희망자가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이 지방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복잡하고 상세한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제출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업체는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장과 감사관은 설문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고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매년 해당 계약과 관련된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장 및 시장 산하 계약 서비스국 국장은 계약 승인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각 기관의 최고 계약 담당관에게 위임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단, 시장은 5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경쟁 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수주되는 계약의 경우는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시의 조달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조달정책 위원회는 시 헌장에 따라 설립됩니다. 이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3명과 감사관이 임명한 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일정에 따른 회의 개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안된 변경사항

이 개정안은 조달정책 위원회가 시의 잠재적 계약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달정책 위원회는 특정 금액 기준 미만의 계약을

2026.7.23

체결한 계약업체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특정 계약업체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설문 항목에 답하거나 주민발의안 중 일부만 답하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시장실 계약 서비스국은 이러한 규칙에 명시된 정책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및 양도권 검토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및 양도권과 관련해 조달정책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더 이상 고객 서비스 계획 초안을 공고하거나 해당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는 존속합니다.

시장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500만 달러를 초과하고 경쟁 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승인 권한을 기관의 최고 계약 담당관에게 위임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시에서 공청회 대신 공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할 권한을 영구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정책 위원회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요건이 적용되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조달정책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관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계약의 최소 금액을 상향 조정할 권한도 부여받게 됩니다.

시행

시장이 기관의 최고 계약 담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고객 서비스 계획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며, 조달정책 위원회가 계약 전 설문지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현장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찬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조달정책 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각 기관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계약의 최소 금액 한도를 조달정책 위원회가 상향 조정할 권한은 203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민발의안 3호현장 개정안: 도로 안전 개선공사 가속화, 시 소유의 미사용 부동산 처분, 사무실 임대요약

도로 안전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 기관 내 협의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시 행정 서비스국(DCAS)이 신속한 토지 이용 검토 절차를 통해 시 소유의 소규모 부동산 및 개발권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불가능한 특정 부동산을 DCAS가 공개 경매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며,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청회 및 시의회의 검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시 공무원들이 사용할 사무실 공간 확보 절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도로 안전 개선공사

현행 지역법에 따르면, 시 산하 기관은 '주요 교통 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교통 개선공사란, 연속 4개 블록 이상 또는 1,000피트 이상에 걸쳐 차로 또는 주차 차선을 제거하는 등 도로의 배치를 변경하는 공사와, 길이에 관계없이 자전거로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주요 교통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기관(대부분의 경우 교통부)은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경찰국, 소방국, 소기업 서비스부, 시장실 산하 장애인 지원실 등 타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소방국의 경우 주요 교통 개선공사 인근에 위치한 관련 소방서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이러한 모든 협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 및 발표 요건은 도로 안전 개선공사의 시행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개정안은 주요 교통 개선공사에 대해 자문을 받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장 이외의 다른 사람과 협의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폐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부가 주요 교통 개선공사를 제안할 때 소방국은 더 이상 영향을 받는 소방서와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교통부가 사고 데이터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의 즉각적인 시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영향을 받는 시의회 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지역사회 위원회에 법정 통지를 하기 이전에 해당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026.7.23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은 기관과의 협의 미이행이 개선공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교통부는 주요 교통 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여전히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기술적 오류나 부주의로 인한 절차 미준수는 도로 안전 개선공사의 시행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 소유 재산의 처분

이 개정안은 (1) 10,000제곱피트 이하의 시 소유 부지와 시 소유 랜드마크 부지에 위치한 개발권에 대해 '신속 토지 이용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를 공개 경매 없이 인접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며, (3) 시에서 이미 재산 처분 승인을 받은 후 현재 요구되는 공청회 중 하나를 폐지할 것입니다.

현행 시 현장에 따르면, DCAS는 시 소유 재산을 매각,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때 다양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한적인 예외사항은 제외하고, 시 재산의 매각, 임대 및 기타 처분은 '토지이용 심사 통일절차(ULURP)'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위원회 및 자치구청장의 자문 의견을 시작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사 및 표결을 거치는 7개월간의 심사 절차입니다. 시에서 재산 처분 권한을 획득하면 해당 재산은 공개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한 가지 예외로, DCAS는 개발이 불가능한 특정 부지를 '토지이용 심사 신속절차(ELURP)'를 활용해 공개 경매 없이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신속절차는 지역사회 위원회에 60일간의 심사 기간과 공청회를 부여하고, 자치구청장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한 뒤,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청회 및 최종 결정을 거치지만, 시의회의 후속 심사는 없는 심사 절차입니다. 이러한 개발 불가능 부지는 공개 경매 없이 인접 소유주에게 매각될 수 있으나, 공개 경매 요건에 대한 이 예외 조항은 2030년에 만료됩니다.

또한 통일절차에 따른 처분 최종 승인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는 계약 체결일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시에서는 해당 청문회 45일 전에 공고를 게시하고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026.7.23

이 개정안은 처분 절차를 여러 측면에서 개정할 것입니다. 첫째, DCAS가 개별 랜드마크가 아니거나 시 소유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개발권으로만 구성된 10,000제곱피트 미만의 시 소유 부동산을 신속 절차를 통해 매각,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개선공사만 이 주민발의안에 명시된 신속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규모나 성격상 주법 및 지방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서 제출이 필요한 개선공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다 포괄적인 통일절차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10,000제곱피트 미만의 소규모 부지와 시 소유 랜드마크 부지상의 개발권에 대한 검토 절차가 단축될 것입니다.

둘째, 이 개정안은 DCAS가 공개 경매 없이 개발 불가능한 특정 부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권한을 영구적으로 부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의회가 처분안을 승인한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 처분 계약 체결 시점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공청회 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사무실 취득

현재 시 공무원을 위한 사무실 공간 취득 제안(기존 건물 내 사무실 임대 포함)은 지역사회 위원회 및 모든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는 절차,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청회 및 표결, 그리고 시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대 계약을 부결할 기회를 포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DCAS는 취득안을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무실 건물 소유주들과 장기간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번 헌장 개정안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청문 및 승인 요건과 시의회 사무실 취득 거부 권한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신, DCAS 국장은 해당 취득이 시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역사회 위원회, 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청장에게 사무실 공간 취득 의향 통지를 제공하며, 취득 완료 후 시의회와 감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

이 헌장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찬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효되나, DCAS가 개발 불가능한 특정 부지를 공개 경매 없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권한을 영구화하는 제안은 2030년 12월 31일에 발효됩니다.

주민발의안 4호

현장 개정안: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수변 허가 업무를 건물관리부로 이관

건물관리부 국장이 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시공 서류를 승인하는 부국장 및 자치구 국장을 추가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건물관리부가 환경보호국, 소방국, 교통국과 협력해서 중앙 집중식 건축 허가 제출 및 승인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변 지역 허가 업무에 관한 책임을 소기업 서비스부에서 건물관리부로 이관합니다.

기존 절차

현행 시 현장은 건물관리부 국장이 제1부국장을 포함해 단 두 명의 부국장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현장은 건물관리부 국장이 각 자치구에 한 명의 자치구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 도면은 국장, 부국장 또는 자치구 감독관 중 한 명이 승인해야 합니다.

신규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관리부는 대부분의 건설 허가를 담당하며, 소방부는 설계도를 검토하고 화재 경보 장치 설치 허가를 발급하고, 환경보호부는 우수 오염 방지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며, 교통부는 공사 기간 중 도로 공간 사용 허가를 발급합니다. 각 기관은 신청자가 검토 및 승인용 서류를 제출하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대부분 지역의 구역 지정 규정 및 건축 법규 집행은 건물관리부가 담당하고, 수변 지역의 특정 구조물(해상 구조물 및 건물 포함)과 시 소유 토지에 대한 집행 및 허가 업무는 소기업 서비스부가 담당합니다.

제안된 변경사항

이 개정안은 건물관리부 국장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특정 제한 사항을 전제로 이러한 부국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교육감이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교육감 대신 자치구 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이 시 전역의 시공 도면을 승인할 수 있는 추가 자치구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경우, 건물관리부가 건축 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와 승인 발급을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부, 소방부, 교통부 등 신축 공사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을 발급하는 다른 기관들도 이 시스템 구축에 있어 건물관리부와 협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2030년까지, 또는 건물관리부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더 늦은 시점까지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수변 건설 허가 권한이 소기업 서비스부에서 건물관리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건물관리부는 수변 일대에서 구역 지정 규정 및 건축 규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소기업 서비스부나 그 전신 기관에서 발급한 기존 허가 및 승인 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시행

수변 건축 허가 권한을 건물관리부로 이관하는 헌장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 또는 수변 구조물의 신축, 개축 및 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채택되어 발효되는 날 중 더 빠른 시점에 발효됩니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헌장 개정안들은 유권자들의 찬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주민발의안 5호현장 개정안: 충분한 예산 예비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기금 적립 목표 설정

시에서 세입안정화기금(일명 ‘비상기금’) 및 기타 예비기금에 유지해야 할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시장실 산하 관리예산국은 비상기금 적립에 관한 산정 방법을 공표해야 합니다. 적립은 해당 산정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연간 예산 절차를 통한 예산 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산정 방법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시에서는 시장이 중대한 재정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 총액의 50% 이상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비상기금

비상기금은 한 해의 초과 세입을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경기 침체, 비상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비상기금은 재정적 필요 시 세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뉴욕시 유권자들은 시에서 비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장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2020년에는 주 의회가 주법을 이에 맞춰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에서 비상기금에 특정액을 예치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상기금에 자금을 예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간 예산 협상 과정을 통해 시장과 시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시장이 타당한 재정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증하지 않는 한, 시에서 비상기금에 예치된 금액의 50% 이상을 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사항

이 개정안은 시에서 비상기금 및 기타 적립금에 전 회계연도 세수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또한, 관리예산국은 감사관과 협의해, 비상기금 잔액이 상기 금액보다 적을 경우 비축 기금에 자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산정 기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2026.7.23

이 산정 기준은 세입 증가 추세, 시의 운영 흑자 규모, 그리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보장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방법론은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적립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목표액에 미달하더라도 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해에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 따른 비상기금 적립금은 시장과 시의회 의 승인을 거쳐 예산 절차를 통해 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방법론은 **2027년 5월**까지 공고되어야 하며, **2030년 5월**까지 갱신되고 그 이후에는 최소 **4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최종 방법론을 공표하기 전에, 관리예산국은 공청회를 개최하기 최소 **30일** 전에 시 공보에 방법론 초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방법론 초안을 공표하기 최소 **30일** 전에, 관리예산국은 해당 방법론을 시의회 의장, 주 감사관 및 뉴욕주 재정통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주 법률에 부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재정적 필요성이 있음을 인증하지 않는 한 시에서 비상기금 잔액의 **50%** 이상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시행

이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찬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효됩니다.